

직무관련기술직불명에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

의안번호	제191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발의년월일 : 1999. 7. 7

발 의 자 : 송참섭 의원 외 28인

1. 주 문

가. 부천시에서 기술직공무원(토목, 건축직)으로 근무하다 뇌물수수 등 직권을 이용한 업무비리로 적발되어 불명에 퇴직한 공무원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관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시장은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.

- 1) 부천시에서 기술직공무원(토목, 건축직)으로 근무하다 뇌물수수 등 비리로 적발되어 불명에 퇴직한 공무원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관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급공사 중 입찰공사 하도급 배제 요망
- 2) 위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전직 공무원 등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는 업자는 공사 하도급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행 요망.

2. 제안이유

가. 부천시에서 토목·건축직으로 근무하다 업자와의 결탁,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으로 불명에 퇴직한 기술직 공무원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부천시청 산하 건설분야 해당부서에 찾아와 전관에우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달라고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,

나. 입찰공사 발주시 원도급자의 하도급을 받기 위해 감독 및 계약부서 담당국·과장·담당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공사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실정임.

다. 또한 이런 행태는 현직 기술직공무원이 연관고리가 되어 전관에 대한 예우를 배제하지 못하고 공

사를 주게 되며 이는 또다시 비리의 쇄사술에 얽히들게 되므로 전과 같은 수령의 늪으로 빠져들
게 되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풀이됨.

라.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불명에 기술직 퇴직자가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후 입찰공사
의 하도급을 수주받으려고 공사감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 압력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이
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이며

마. 위와 같은 현 행태를 개선하고 선량하고 성실하나 인맥이 없어 공사수주를 받지 못하는 관내 건설
업자에게 관급공사의 혜택을 주고자 함이니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
을 건의함.

직무관련기술직불명에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문

부천시에서 기술직공무원(토목, 건축직)으로 근무하다 뇌물수수 등 비리로 적발되어 불명에 퇴직한 공무
원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관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시장은 충분
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.

- 1) 부천시에서 기술직공무원(토목, 건축직)으로 근무하다 뇌물수수 등 직권을 이용한 업무비리로 적발
되어 불명에 퇴직한 공무원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관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급공사
중 입찰 공사 하도급 배제 요망
- 2) 위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전직 공무원 등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
는 업자는 공사 하도급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행 요망.

부천시의회 의원일동